

(재)충남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44호

2026년 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모집공고

직장 내 아이키움 배려문화의 민간 확산을 위한 「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9일

(재)충남경제진흥원장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일·가정 양립 문화의 안정적 정착 및 민간 확산을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 중심으로 출산·육아 우수기업 발굴 및 지원

□ 신청기간: 2026. 3. 9.(월) ~ 4. 3.(금) 18:00

□ 모집규모: 우수기업 30개사

□ 지원대상: 충남 도내 중소기업(5인 이상 ~ 300인 미만)

□ 지원내용: 우수기업 인증 및 장려금 지원

□ 선정절차 ※ 세부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
|-------------------|
| ① 모집 |
| 기업 → 진흥원 |
| 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
| 3.9.(월)~4.3.(금) |

»

| |
|-------------------|
| ② 적격심사 |
| 진흥원 |
| 제출서류 기반 적격 심사 |
| 3.30.(월)~4.10.(금) |

»

| |
|-------------------|
| ③ 현장실사 |
| 진흥원 → 기업 |
| 신청기업 현장점검 |
| 4.13.(월)~4.24.(금) |

»

| |
|------------------|
| ④ 최종선정 |
| 진흥원 → 기업 |
| 최종선정 및 장려금 지원 |
| 4.29.(수) |

2.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충족 및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도내 중소기업

- 1) 여가부 주관의 '가족친화인증기업'도 신청 가능. 다만, 공기업 · 공공기관 제외
- 2) 2026년 출산·육아 4+4 제도 도입기업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 가능

| 구분 | 상세내용 | 비고 |
|-------|-------------------------|-----------------------|
| 도내 기업 | 충남도 소재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기준 |
| 업력 | 업력 2년 경과기업 | 사업자등록일 기준 |
| 기업규모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 300인 미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 지원 제외 대상 >

-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관련 명단 공개 사업장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다만 신청일 이전 고용 기준 충족 시 예외)
-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단체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다만 신청일 이전 의무 고용 충족 시 예외)
-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 2025년 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

3. 지원내용(요약)

| 구분 | 상세내용 | 비고 |
|------------|--|-----------------------|
| 장려금 지원 | 출산·육아 우수기업에 각 10백만원 장려금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도개선 등 |
| 인사·노무 컨설팅 | 인사·노무 컨설팅 을 통해 일·가정 양립 수준 향상 유도 | 사전 제출자료 현장 실사 시 병행 |
| 기업 인증 및 홍보 | · 「출산·육아 우수기업」인증서 및 인증패, 인증 현판 제공 · 도와 충남경제진흥원 누리집 홍보, 우수기업 기사 제작 등 | - |

3. 선정 절차

① 사업공고 및 신청

- (모집규모) 30개사
- (신청기간) 2026. 3. 9.(월) ~ 4. 3.(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통합지원시스템(cnsp.or.kr) 온라인 접수

<통합지원시스템 신청방법>

- ① 통합지원시스템(www.cnsp.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 사업공고 - 중소기업지원 - 해당 사업명 클릭
- ③ 사업 신청 필요서류 확인, 제출서류 업로드 및 사업 신청

○ (제출서류)

- 신청 오류 발생 시, 관련 서류 전자우편 발송 및 담당자 문의 요망
※ 문의사항 ☎ 041-404-1482, ✉ cn_fund@naver.com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 1 | 신청서(서명 날인 스캔 파일) | 서식 제1호 |
| 2 | 출산·육아 우수기업 추진실적 보고서 | 서식 제1-1호 |
| 3 | 실적별 증빙자료(가점항목 포함) | 붙임2. 제출서류 목록 참고 |
| 4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서식 제4호 |
| 5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조회본 |
| 6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고일 이후 조회본 |
| 7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해당 없음 |

② 기업 선정



- (사전검토) 사업장별 결격사유 조회·확인(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즉시 보완 요청)
 - ※ 보완에 불응 또는 지정된 기한 내 미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서면심사 결과는 충남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 현장실사 등 안내 사항은 사업장별로 안내
- (현장평가) 현장점검 및 아이키움 배려문화 컨설팅 병행
 - ※ 진행되는 현장 컨설팅(실사)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제외 가능

< 현장평가 추진 절차 >

- ① (대상) 서면심사(사전검토)를 통과한 기업
- ② (방식) 현장 컨설팅을 통해 일가정양립 수준 향상 유도 및 실사
 - 실사 결과 미진한 영역을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진행
- ③ (점검내용) ①출산·육아 우수기업 신청서, ②실적보고서, ③증빙자료 등(기업DB 포함)
 - ※ 기업 대표 또는 인사담당자 인터뷰(必), 제도 수혜자 인터뷰
- ④ (보고) 현장컨설팅단은 사업장별 '현장실사 결과 보고서' 제출하되, 실사 사진 및 기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제출
- ⑤ (선정 취소) 현장확인 결과 신청 당시 제출내용과 다른 경우는 허위 서류 제출로 선정 취소, 다음연도 사업 신청자격 제한

- (최종심의) 신청기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점수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붙임1. 평가항목별 배점 참고) ※ 평가점수 40점 미만 시 탈락
 - 현장의 다양한 출산·육아 우수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
- (선정공고) 우수기업 최종 선정 결과는 충남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며 협약 일정, 인증식 등의 안내사항은 별도 안내
 - ※ 4월 말 안내 예정, 미선정 된 기업에는 별도 결과 안내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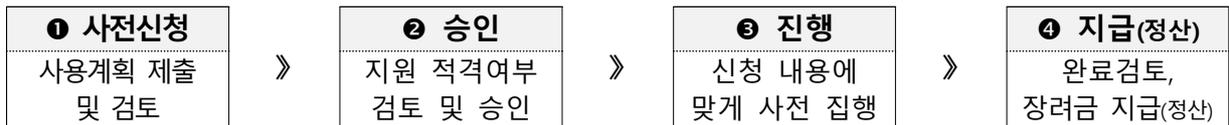
4. 지원 내용(세부)

① 장려금 지급

- (대상기업) 우수기업 선정 30개사
- (지원규모) 선정기업에 각 10백만원 장려금 지원
- (지원금 지원항목)

| 연번 | 지원항목 | | 내용(비고) | |
|----|-------|-------------------|-------------------------|-----------------------------|
| 1 | 환경개선 | 시설비 | 출산육아 친화환경 조성 | |
| 2 | | 물품 및 장비 구입 | 물품 | 직원 지급 또는 사무실 비치용 출산·육아 용품 등 |
| 3 | | | 장비 | 근로자 복지 향상 장비 구입 등 |
| 4 | | | 인프라 구축 |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시스템 등 |
| 5 | 제도 개선 | 자문료 | 일문화 양립 확산 복지 제도 개선 자문 등 | |
| 6 | 교육 | 교육비 | 근로자 교육워크숍 비용 등 | |
| 7 | 기타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항목 | 사전 협의 필수 | |

○ (지급절차)



② 기업인증 및 홍보 등

- (인증지원) 「출산·육아 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인증 현판 제공
- ※ **선정기업은 우수기업 인증식 참석 필수**
- (유효기간) 일가정양립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인증(~'27.12.31.)**
- (홍보지원) 선정기업 홍보동영상 및 우수기업 사례집 제작, 우수사례 공모전 통한 시상 및 홍보지원(기획기사, 온라인 홍보 등)

③ 사후 관리

- (지정취소) 결격사유 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또는 사회적 논란 또는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지원금 환수) 지정 후 1년 이내 취소 시 장려금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며 취소일로부터 2년간 신청 자격 제한
- (점검 방법) 수시 점검(필요시 현장 확인)

붙임 1

선정기준

○ 총점 130점(Ⓐ+Ⓑ+Ⓒ+Ⓓ+Ⓔ) +가점 10점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
| 합계 | | 130(10) | |
| 정 량 | Ⓐ 기업 분위기 | 10 | 5 - (A-1) 여성 근로자 비율 |
| | | | 5 - (A-2) 초등학생 이하 유자녀 근로자 비율 |
| | Ⓑ 출산·육아 지원 인프라 구축 | 40 | 5 - (B-1) 난임 치료 지원제도 시행 여부 |
| | | | 5 - (B-2) 유산·사산 휴가 시행 여부 |
| | | | 5 - (B-3) 출산전후휴가 시행 여부 |
| | | | 5 - (B-4)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여부 |
| | | | 5 - (B-5) 출산 지원제도 시행 여부 |
| | | | 5 - (B-6) 출산·육아 지원 편의시설 설치 여부 |
| | | | 5 - (B-7) 육아휴직 제도 시행 여부 |
| | | | 5 - (B-8) 육아휴직 복귀 시 적응 지원프로그램 시행 여부 |
| | Ⓒ 출산·육아 지원 인프라 활용 | 20 | 5 - (C-1)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비율 |
| | | | 5 - (C-2)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비율 |
| | | | 5 - (C-3) 여성 육아휴직 활용 비율 |
| | | | 5 - (C-4) 남성 육아휴직 활용 비율 |
| | Ⓓ 유연근무제 도입·활용 | 30 | 15 - (D-1) 출산·육아 4+4제도(주 4일 출근제 4시 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 |
| 15 - (D-2) 출산·육아 4+4제도(주 4일 출근제 및 4시 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 | | | |
| 정 성 | Ⓔ 기타 노력 | 30 | - (E) 일·가정양립 및 출산·육아 우수기업을 위한 기타 노력(제도·문화) |
| 가 점 | Ⓕ 가점 | 10 | 5 - (F-1) 정부·지자체 일·가정양립 관련 우수기업 선정·수상(최근 3년) |
| | | | 5 - (F-2) 정부·지자체 주관 일·가정양립 사업참여 실적(최근 3년) |

* 서류평가 +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며 개정법의 적용 시점은 해당 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

붙임 2

제출서류 목록

| 번호 | 자료항목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 ■ 신청서류 | | | |
| 1 | 신청 | 신청서(서명 날인 스캔 파일) | 통합지원 시스템 온라인 접수 |
| 2 | | 출산·육아 우수 추진실적 보고서 | |
| 3 |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
| 4 | | 사업자등록증 | |
| 5 | | 법인등기부등본 | |
| 6 | | 실적별 증빙자료(가점항목 포함) | 전자메일 제출 |
| ↳ ★ 실적별 증빙자료(상세) | | | |
| A-1 | 정량 | < 여성 근로자 비율 > → 직원 명부 등 | <u>항목별로</u> <u>파일을</u> <u>압축하여</u> <u>전자메일로</u> <u>제출</u> ※ 파일명: 번호/자료항목/ 제출서류 순 기재 (예시) D-1/ 4일 출근제 시행 여부/ 단체협약 |
| A-2 | | < 초등학교 이하 유자녀 근로자 비율 > → 직원 명부 등 | |
| B-1 | | < 난임 치료 지원제도 도입·시행 여부 > → 제도 구축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시행문 등 | |
| B-2 | | < 유산·사산 휴가 도입·시행 여부 > → 제도 구축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시행문 등 | |
| B-3 | | < 출산전후휴가 도입·시행 여부 > → 제도 구축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시행문 등 | |
| B-4 | | <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행 여부 > → 제도 구축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시행문 등 | |
| B-5 | | < 출산 지원제도 도입·시행 여부 > → 제도 구축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시행문 등 | |
| B-6 | | < 출산·육아 지원 편의시설 설치 여부 > → 영업신고증, 위탁시 계약서 ※ 현장실사 시 확인 | |
| B-7 | | < 육아휴직 제도 도입·시행 여부 > → 제도 구축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시행문 등 | |
| B-8 | | < 유아휴직 복귀 시 적응 지원프로그램 도입·시행 여부 > → 제도 운영에 대한 내부 시행문, 사용 가이드(매뉴얼), 직원 사용 현황, 규정·기준,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내부 공식 문서 등 | |

| 번호 | 자료항목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 ↳ ★ 실적별 증빙자료(상세) | | | |
| C-1 | 정량 | <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비율 > →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 확인 자료 ※ 현장실사 시 특정 근로자에 대한 근태자료 요구할 수 있음 | 통합지원 시스템 온라인 접수 전자메일 제출 <u>항목별로</u> <u>파일을</u> <u>압축하여</u> <u>전자메일로</u> <u>제출</u> ※ 파일명: 번호/자료항목/ 제출서류 순 기재 (예시) D-1/ 4일 출근제 시행 여부/ 단체협약 |
| C-2 | | <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비율 > →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 확인 자료 ※ 현장실사 시 특정 근로자에 대한 근태자료 요구할 수 있음 | |
| C-3 | | < 여성 육아휴직 활용 비율 > → 근로자별 육아휴직 사용 승인 내부 문서 | |
| C-4 | | < 남성 육아휴직 활용 비율 > → 근로자별 육아휴직 사용 승인 내부 문서 | |
| D-1 | | < 출산·육아 4+4 제도(주 4일 출근제, 4시 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 > → 제도 구축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시행문 등 | |
| D-2 | | < 출산·육아 4+4 제도(주 4일 출근제, 4시 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 > → 근로자별 유연근무제 사용 승인 내부 문서 →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 확인 자료 ※ 현장실사 시 특정 근로자에 대한 근태자료 요구할 수 있음 | |
| E | 정성 | < 일가정양립 및 출산·육아 우수기업을 위한 기타 노력(제도·문화) > → 항목별 제도 구축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시행문 등 ※ 현장실사 시 특정 근로자에 대한 근태자료 요구할 수 있음 | |
| F-1 | 가점 | < 정부·지자체 일가정양립 관련 우수기업 선정·수상(최근 3년) > → 우수기업 인증·선정서 또는 인증패(사진) ※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인증 포함 | |
| F-2 | | < 정부·지자체 주관 일가정양립 사업참여 실적(최근 3년) > → 참여 확인을 위한 사업참여 확인서 또는 내부 문서, 행사 현장 사진 등 | |

※ B-1~B-8 기준실적은 **제도의 도입 여부로 판단**

-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대상자가 없어 사용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

※ 상기 외 실적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신청서 작성요령

- (1) **신청구분:** 기업단위(본사 포함 전체) 또는 사업장단위(공장, 지사 등) 여부, 가능한 기업(법인) 단위 신청을 권장
-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기업단위는 본사, 사업장 단위는 당해 사업장 기준으로 기입
- (3) **사업체명:** 기업단위는 본사, 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 명칭(사업자등록증에 기입된 명칭)
- (4)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입(합병에 따른 사업승계는 그 이전 사업개시일 기입)
- (5)-①~② **대표자(직책):** 기업단위는 본사, 사업장 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주의 성명 및 직책·직위 기재
- (6) **소재지:** 기업단위는 본사 주소만 기재하고, 사업장 단위는 본사 및 사업장 주소 모두 기재
- (7)-①~② **업종 및 주생산품/서비스:** 신청기업의 사업종류 및 산출물 기입(다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업종 중심으로 기재)
- (8)-①~② **총자산 및 연 매출액:** 해당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작성
- (9)-① **근로자수:** 직전년도 말일('25.12.31.) 기준 근로자 수(사업장 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수)
- (9)-② **초등학교 이하 유자녀 근로자 수:** 직전년도 말일('25.12.31.) 기준 전체 근로자(남녀포함) 중 유자녀 근로자 수 기재
- (10) **신청인:** '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선정 신청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 사항 기재
- (11) **결격사유 해당 여부:** '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선정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청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입

<서식 제 1-1호>

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추진실적 보고서

○○○사

1. 정량지표

| 평가항목 | | 배점 |
|--|--------------------------|----------------------------------|
| A-1. 제도 도입 형태 | | 5 |
| ○ 운영실적(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 |
|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 수 (A) | 사업장 내 여성 근로자 수 (B) | 사업장내 여성 근로자 비율 (B/A) × 100 |
| _____명 | _____명 | _____% |
| <p>※ 작성 시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여성 근로자 수로 계산 - 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제외(A, B 모두 제외) | | |

| | |
|-------------|-----------|
| 평가항목 | 배점 |
|-------------|-----------|

| | |
|--------------------------------|----------|
| A-2. 초등학생 이하 유자녀 근로자 비율 | 5 |
|--------------------------------|----------|

○ 운영실적(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 수 (A) | 사업장 내 초등학교 이하 유자녀 근로자 수 (B) | 사업장내 초등학교 이하 유자녀 근로자 비율 (B/A) × 100 |
|--------------------------|--------------------------------------|--|
| _____명 | _____명 | _____% |

※ 작성 시 참고사항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 수 대비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유자녀 근로자 수로 계산
- 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제외(A, B 모두 제외)

| 평가항목 | 배점 |
|------|----|
|------|----|

| | |
|------------------------------|----------|
| B-1. 난임 치료 지원제도 시행 여부 | 5 |
|------------------------------|----------|

○ 운영실적(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구분(지원유형) | 추진 실적 | | | |
|--------------------------|--------------|--------------------------|--------------------------|------------|
| 난임 치료 지원제도 도입 및 시행 여부 | 법정 난임치료휴가 시행 | <input type="checkbox"/> | | |
| | 난임치료휴가 유급 시행 | <input type="checkbox"/> | | |
| | 비용지원 | 진단비 지원 | <input type="checkbox"/> | (천원) |
| | | 시술비 지원 | <input type="checkbox"/> | (천원) |
| | | 기타 | () | |

※ 작성 시 참고사항

- 법정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4일 무급)이며, 본 사업의 유급 지원은 **법정 유급 2일 외 무급 휴가(4일)에 대해 사업주가 추가로 유급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 비용지원은 난임치료 휴가 외 사업주의 진단비, 시술비, 기타 지원(기술 요)을 의미함

| 평가항목 | 배점 |
|------|----|
|------|----|

| | |
|----------------------------|----------|
| B-2. 유산·사산 휴가 시행 여부 | 5 |
|----------------------------|----------|

○ 운영실적(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구분(지원유형) | 추진 실적 | |
|-------------------|------------------|-------------------------------------|
| 유산·사산 휴가 시행 여부 | 법정 유·사산 휴가 시행 | <input type="checkbox"/> |
| | 유·사산 휴가 기간 확대 시행 | <input type="checkbox"/> |
| | 유산산 휴가 비용지원 | <input type="checkbox"/> (천원) |

※ 작성 시 참고사항

- 법정 유·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근거한 유급휴가를 의미하며 기간 확대 시행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법정 휴가 기간***을 상회하는 사용자 추가지원을 의미함
- 비용지원은 여성 근로자의 유·사산 시 사업주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위로금 등의 혜택을 의미

* 유·사산 휴가 기간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평가항목 | 배점 |
|------|----|
|------|----|

| | |
|--------------------------|----------|
| B-3. 출산전후휴가 시행 여부 | 5 |
|--------------------------|----------|

○ 운영실적(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구분(지원유형) | 추진 실적 | | |
|-----------------|-----------------|--------------------------|--------------------------|
| 출산전후휴가 시행 여부 | 법정 출산전후휴가 시행 | <input type="checkbox"/> | |
| |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시행 | <input type="checkbox"/> | |
| | 유급시행 | 법정기간 | <input type="checkbox"/> |
| | | 전 기간 | <input type="checkbox"/> |

※ 작성 시 참고사항

- 법정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근거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의미함

| 근로기준법 |
|--|
| <p>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

- 기간 확대 시행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 유급 시행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른 법정 유급 의무기간 60일(다태아 75일) 외에, 무급으로 규정된 잔여 휴가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추가로 유급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예: 출산전후휴가 전 기간 90일 유급 지원)

| 평가항목 | 배점 |
|------|----|
|------|----|

| | |
|--|----------|
| B-4.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여부 | 5 |
|--|----------|

○ 운영실적(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구분(지원유형) | 추진 실적 | |
|--|------------------------------------|--------------------------|
|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행 여부 |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input type="checkbox"/> |
| |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input type="checkbox"/> |
| | 법정 임신부 출퇴근 시간 변경 | <input type="checkbox"/> |
| | 임신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시간) 확대 적용 | <input type="checkbox"/>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급 지원 | <input type="checkbox"/> |

※ 작성 시 참고사항(개정 전 기준 적용)

-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근거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의미함

| 근로기준법 |
|--|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u>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u>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근거한 1년 이내의 근로시간 단축을 의미함(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 평가항목 | 배점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 <p>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임신부 출퇴근 시간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에 근거하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신청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임금 삭감 없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는 제도를 의미함 - 임신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적용은 적용 기간 및 시간의 확대를 모두 포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급 지원은 법정 임금지원 범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되는 임금에 대해 사용자가 추가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 | |

| 평가항목 | 배점 |
|------|----|
|------|----|

| | |
|---------------------------------|----------|
| B-6. 출산·육아 지원 편의시설 설치 여부 | 5 |
|---------------------------------|----------|

○ 운영실적(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구분(지원유형) | 추진 실적 | |
|------------------------|---------|--------------------------|
| 출산·육아 지원 편의시설 설치 여부 | 여성휴게실 | <input type="checkbox"/> |
| | 산모휴게실 | <input type="checkbox"/> |
| | 수유실 | <input type="checkbox"/> |
| | 직장어린이 집 | <input type="checkbox"/> |
| | 기타 | () |

※ 작성 시 참고사항

- 직장어린이 집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를 위해 설치한 어린이집을 의미하며 단독, 공동, 위탁 운영 모두 인정
-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설치 必
- 기타 여성휴게실, 산모휴게실, 수유실 등은 법적 설치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사내·외 시설을 의미함

| 평가항목 | 배점 |
|------|----|
|------|----|

| | |
|---------------------------|----------|
| B-7. 육아휴직 제도 시행 여부 | 5 |
|---------------------------|----------|

○ 운영실적(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구분(지원유형) | 추진 실적 | |
|---------------|---------------|--------------------------|
| 육아휴직 제도 시행 여부 | 법정 육아휴직 | <input type="checkbox"/> |
| | 육아휴직 기간 확대 실시 | <input type="checkbox"/> |
| | 육아휴직 유급 실시 | <input type="checkbox"/> |

※ 작성 시 참고사항

- 법정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에 따른 1년 이내의 휴가를 의미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 <p>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 육아휴직 기간 확대 시행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1년)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추가로 휴직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 육아휴직 유급 지원은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정부의 육아휴직급여 외에,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 지원을 의미함.

※ 육아휴직급여 :

-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통상임금에 해당,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 통상임금에 해당,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에 80%에 해당,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 평가항목 | 배점 |
|------|----|
|------|----|

| | |
|-----------------------------------|----------|
| C-1.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비율 | 5 |
|-----------------------------------|----------|

○ 운영실적(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 | |
|--|-----------------------------------|--|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수 (A)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여성 근로자 수 (B) |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률 (B/A) × 100 |
| _____명 | _____명 | _____% |

※ 작성 시 참고사항

-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2025. 1. 1. ~ 2025. 12. 31. 기간 중 사업장 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수 대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 수의 비율로 산정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u>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u>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제외(A, B 모두 제외)

| 평가항목 | 배점 |
|------|----|
|------|----|

| | |
|-----------------------------------|----------|
| C-2.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비율 | 5 |
|-----------------------------------|----------|

○ 운영실적(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 수 (A)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남성 근로자 수 (B) |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률 (B/A) × 100 |
|--|-----------------------------------|--|
| _____명 | _____명 | _____% |

※ 작성 시 참고사항

-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2025. 1. 1. ~ 2025. 12. 31. 기간 중 사업장 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 수 대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 수의 비율로 산정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 <p>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u>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u>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제외(A, B 모두 제외)

| 평가항목 | 배점 |
|------|----|
|------|----|

| | |
|---------------------------|----------|
| C-3. 여성 육아휴직 활용 비율 | 5 |
|---------------------------|----------|

○ 운영실적(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수 (A) | 육아휴직 사용 여성 근로자 수 (B) | 여성 육아휴직제도 활용률 (B/A) × 100 |
|---|----------------------------|---------------------------------|
| _____명 | _____명 | _____% |

※ 작성 시 참고사항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장 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 여성 근로자 수로 계산
- 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제외(A, B 모두 제외)

| 평가항목 | 배점 |
|------|----|
|------|----|

| | |
|---------------------------|----------|
| C-4. 남성 육아휴직 활용 비율 | 5 |
|---------------------------|----------|

○ 운영실적(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 수 (A) | 육아휴직 사용 남성 근로자 수 (B) | 남성 육아휴직제도 활용률 (B/A) × 100 |
|---|----------------------------|---------------------------------|
| _____명 | _____명 | _____% |

※ 작성 시 참고사항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장 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 남성 근로자 수로 계산
- 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제외(A, B 모두 제외)

| 평가항목 | 배점 |
|---|-----------|
| D-1. 출산·육아 4+4제도(주 4일 출근제, 4시 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 | 15 |

○ 운영실적(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구분(지원유형) | 시행 여부 | |
|----------------|----------|--------------------------|
|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 | 시차출퇴근 | <input type="checkbox"/> |
| | 선택근무 | <input type="checkbox"/> |
| | 재택근무 | <input type="checkbox"/> |
| | 원격근무 | <input type="checkbox"/> |
| | 근로시간 단축제 | <input type="checkbox"/> |

※ 작성 시 참고사항

- '유연근무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 | |
|-----------------|--|
| 시차출퇴근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 선택근무 |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 재택근무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
| 원격근무 |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 근로시간 단축제 | 전일제 근로자(주당 35시간 이상 근로)가 임신·육아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단축기간 만료 또는 단축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 ※ 법정 단축제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이외 사업주 재량으로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 |

| 평가항목 | 배점 |
|------|----|
|------|----|

| | |
|--|-----------|
| D-2. 출산·육아 4+4제도(주 4일 출근제 및 4시 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 | 15 |
|--|-----------|

○ 운영실적(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실 근로자 수 (A)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수 (B) | 유연근무제 출근제 활용률 (B/A) × 100 |
|-----------------------------------|-----------------------|------------------------------|
| _____명 | _____명 | _____% |

※ 작성 시 참고사항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장 내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실 근로자 수 대비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수로 계산
- 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제외(A, B 모두 제외)

2. 정성지표

| 평가항목 | 배점 |
|---|-----------|
| E-1. 일가정양립 및 출산·육아 우수기업을 위한 기타 노력 | 30 |
| <p>○ 시행 동기</p> <p>-</p> <p>-</p> <p>○ 추진 현황</p> <p>-</p> <p>-</p> <p>○ 도입 효과</p> <p>-</p> <p>-</p> | |
| <p>※ 작성 시 참고사항</p> <p>- 하단의 예시 항목 중 시행하고 내용이 있으면 제도의 개요 및 운영현황과 효과 등에 대해 기재(분량은 2p 내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제출 必)</p> | |
| <p>(작성 예시)</p> <p>① 유연근무 활성화 노력</p> <p>- 유연근무 확대, 규정 마련 통한 제도화, 인프라 도입, 기타 다양한 유연근무 신설</p> <p>② 근로시간 단축 및 초과근무 감축 노력</p> <p>- 정시퇴근 관리체계 운영, 기타 초과근무 감축 노력</p> <p>③ 휴가(휴직) 사용 촉진 노력</p> <p>- 연차휴가 사용 촉진 노력, 기타 법정 외 휴가제도 신설·운영 등</p> <p>④ 육아지원제도 확대 노력</p> <p>- 법정 육아지원제도 초과 부여, 사내 각종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타 육아지원 홍보·분위기 조성 등</p> <p>⑤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p> <p>-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회의·보고·업무보고 방식 개선, 관리자의 솔선수범 리더쉽 등</p> | |

3. 가점

| 평가항목 | | 배점 | |
|--|-------------|-----------|----|
| F-1. 정부·지자체 일가정양립 관련 우수기업 선정·수상(최근 3년) | | 5 | |
| ○ 선정·수상실적(2023 ~ 2025년) | | | |
| NO | 추진 실적 | | |
| | 수상 및 인증획득 명 | 수상(인증) 일자 | 주관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p>※ 작성 시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또는 충청남도(유관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선정·수상 모두 포함 -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사업장 포함 | | | |

| 평가항목 | 배점 |
|------|----|
|------|----|

| | |
|--|----------|
| F-2. 정부·지자체 주관 일가정양립 사업참여 실적(최근 3년) | 5 |
|--|----------|

○ 참여실적(2023 ~ 2025년)

| NO | 추진 실적 | | |
|----|--------------|----------|----|
| | 일가정양립 참여 사업명 | 사업 참여 일자 | 주관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작성 시 참고사항

- 중앙정부 또는 충청남도(유관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일가정양립 관련 사업참여 실적 모두 포함

